



● 공통 자격요건 나이 관련 안내드립니다.

- ① 공무원(기술직)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자 및 만 60세 미만인 자
→ 1966년 6월 23일 ~ 2008년 6월 22일 사이 출생자
- ② 일반직·공무원(그 외)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자 및 만 60세 미만인 자
→ 1966년 7월 2일 ~ 2008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
- ③ 계약직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및 만 70세 미만인 자
→ 1956년 7월 2일 ~ 2008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

● 제출서류 中 <신체검사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① 공통(구내운전직 外) : 「채용신체검사서(일반)(또는 공무원용)」 1부
→ 임용예정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검사본에 한하여 유효
- ② 구내운전직 :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검사서 1부
→ 구내운전직은 유효기간 내 발급받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서를 1부 제출
→ 임용예정일 기준 2년 이내 실시한 철도안전법상 검사본에 한하여 유효

● 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자격증명의 혼동 : 증빙이 가능한 자격증명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 '산업안전기사' 로 오기입
구(과거) 자격증명의 혼동 → 산업인력공단 등 자격 발행처 확인 후 증빙이 가능한 자격증명으로 작성
가산점 적용 자격증 명칭 정확히 기재 → 철도교통안전관리자(발급처: 교통안전공단) 인정
→ 철도운영안전관리자(발행처: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미인정
- ② 취업지원대상자 비율 :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후 보훈 비율 확인 후 기재
- ③ 가족의 연락처로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발견시 '취소'처리 함)
- ④ 지원 분야 잘못 선택 : 지원서 수정 가능
(단, 최종제출했을 경우 지원서 삭제 후 재작성 → 삭제방법 FAQ확인)
- ⑤ 경력기간 등의 "날짜" 오기입 : 반드시 경력증명서 발급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 경력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업명, 공공기관명 기입가능여부
- 경력기술서 '직장명' 항목에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칭 정확히 기재
(예시) 한국철도공사 O, 공사 서울차량기지 X
- 서술형 항목에 기관명 기재 가능. 다만 타 기재 사실로부터 출신지 등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블라인드 위배에 해당
- ⑦ '[붙임1] 우대자격증 종류' 상 분야 세부

직 군	분 야
일반직, 공무원사무직	채용형인턴, 공무원사무직 라급
수송직, 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수송직, 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기술직	기술직

● 국가기술법상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통폐합 및 명칭 변경 관련 안내드립니다.

① 일반직, 공무사무직

자격증명	구 자격증명		
철도운송산업기사	열차조작산업기사	열차조작기능사1급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1급	기계·화공·전기안전기사1급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2급	기계·화공·전기안전기사급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1급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2급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취급기능사2급(1류~6류)	위험물관리기능사(1류~6류)	위험물기능사(1류~6류)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술사(수학응용)	정보처리기술사(정보처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1급 정보기술다기능기술자	정보처리기사2급 정보처리기능사1급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2급		

② 수송직, 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자격증명	구 자격증명		
철도차량기술사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기사1급		
철도차량산업기사	철도차량기사2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1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전기기능사1급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1급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객화차정비기능사1급	객화차정비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동력차지기능장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철도동력차전기기능사2급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2급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2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객화차정비기능사2급	객화차정비기능사	
철도운송산업기사	열차조작산업기사	열차조작기능사1급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1급	기계·화공·전기안전기사 1급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2급	기계·화공·전기안전기사 2급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취급기능장1급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취급기능사2급(1류~6류)	위험물관리기능사(1류~6류)	위험물기능사(1류~6류)

● 국가기술법상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통폐합 및 명칭 변경 관련 안내드립니다.

③ 기술직

자격증명	구 자격증명			
건설기계기술사	산업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산업기계)	기계기술사(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1급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기사2급		
건설안전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1급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2급			
기계안전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기계안전)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정비기능사1급	기계정비다가능기술자	
→ 설비보전산업기사	산업기계정비기능사1급	발전기계설비기능사1급		
※ 기계정비산업기사는 2025년부터 설비보전산업기사로 통합 운영됨.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중정비기사2급	중정비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기능사1급	중기검사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2급	중기차체정비기능사2급	중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2급	중기기관정비기능사2급	
농업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2급	농업기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 설비보전기능사	-	-	-	-
※ 기계정비기능사는 2025. 1. 1.부터 설비보전기능사로 통합 운영됨.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1급	기계·화공·전기안전기사 1급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2급	기계·화공·전기안전기사 2급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취급기능장1급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취급기능사2급 (1류~6류)	위험물관리기능사 (1류~6류)	위험물기능사 (1류~6류)	

※ 허위로 입력(제출)하거나 잘못 입력(제출)하여 최종 제출(증빙)서류와 입력(제출)정보가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 관련 안내사항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자격요건 관련 제출서류는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분야	지원서 작성 시 제출서류
채용형인턴 (안전관리자)	· 자격요건에서 제시하는 자격증(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기술직	· 자격요건에서 제시하는 자격증(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2종 모두제출)
구내운전직	· 직무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관련 경력이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철도면허증(앞, 뒤) 사본 · 철도적성검사판정서 1부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검사본)
전호연료직	· 직무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그 외 분야	없음

* 지원서 작성 시 각 분야별 해당 서류 제출란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 채용 신체검사서 기준일 관련 안내

공고일(2026. 4. 21.) 이후 신체검사를 신규로 받은 대상자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비용 지급 예정이오니, 새로 검사 및 발급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입사지원시 필기전형 장애 편의지원 신청 안내

- ① 시간연장(1.5배)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 (필수)장애인등록증, (필요 시)의사진단서
- ② 필기시험 장애 편의지원 관련 세부내용은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4]장애인 입사지원자 편의제공 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③ 의사진단서 발급기관 :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도는 상급종합병원)
* 위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된 의사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의사진단서 발급기한 :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26. 5. 5.)기준 2년 이내
* 발급기한 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⑤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4]장애인 입사지원자 편의제공 사항'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증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로 대체, 의사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허위로 입력(제출)하거나 잘못 입력(제출)하여 최종 제출(증빙)서류와 입력(제출)정보가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자격 체크 안내사항**

- 아래표를 확인하신 뒤 분야별 선택사항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의 사항을 선택할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구분	직군	분야	항목
공개 채용	일반직	채용형인턴(인사)	① [공통] 공통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공고문 확인) → '해당' 선택 ② [공통_일반직·공무직]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자 및 만 60세(정년) 이하인 자 → '해당' 선택
		채용형인턴(전산)	
		채용형인턴(성과관리)	
		채용형인턴(재무회계)	
		채용형인턴(운송사무)	
		채용형인턴(운송사무)	
		채용형인턴(운송사무)	
	공무직	공무사무직 라급(운송사무) 수송직	
제한 경쟁	일반직	채용형인턴(안전관리자)	① [공통] 공통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공고문 확인) → '해당' 선택 ② [공통_일반직·공무직]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자 및 만 60세(정년) 이하인 자 → '해당' 선택 ③ [제한경쟁_채용형인턴(안전관리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 3개의 자격증 중 소지한 자격증 선택
	공무직	기술직	① [공통] 공통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공고문 확인) → '해당' 선택 ② [공통_일반직·공무직]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자 및 만 60세(정년) 이하인 자 → '해당' 선택 ③ [제한경쟁_기술직]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및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 (2종 모두 필수) → '해당' 선택
	계약직	구내운전직	① [공통] 공통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공고문 확인) → '해당' 선택 ② [공통_계약직]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자 및 만 70세 이하인 자 → '해당' 선택 ③ [제한경쟁_구내운전직]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중 하나의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운영기관 기관사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해당' 선택
		전호연료직	① [공통] 공통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공고문 확인) → '해당' 선택 ② [공통_계약직]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자 및 만 70세 이하인 자 → '해당' 선택 ③ [제한경쟁_전호연료직] 철도운영기관(철도청, 한국철도공사 및 타 철도 운영기관)의 열차운전, 열차운전취급(신호), 철도역무, 철도승무(수송),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연료관리(급유)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해당' 선택

● 제출서류 안내사항

- 아래표를 확인하신 뒤 분야별 제출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직군	분야	항목
제한 경쟁	일반직	채용형인턴(안전관리자)	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공무직	기술직	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2종 모두 제출
	계약직	구내운전직	① 철도면허증(앞, 뒤) 사본 1부 ② 철도적성검사 판정서 1부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검사본) ③ 직무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④ 관련 경력사항이 기재된(가입기간, 회사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전호연료직	① 직무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② 관련 경력사항이 기재된(가입기간, 회사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 제출서류 항목에 맞추어 올바른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체크 안내사항

- 선택사항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의 사항을 선택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체크항목
공직자로 재직할 경험이 있는지 여부	① 공직자에 경력이 있는 경우 : 있음 ② 공직자 경력이 없는 경우 : 없음
1, 2, 3-1, 3-2(모두 총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비해당' 선택 → '해당(지원불가)' 선택 할 경우 불이익발생
1, 2, 4-1, 4-2, 4-3(모두총족) 취업제한대상자(제8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비해당' 선택 → '해당(지원불가)' 선택 할 경우 불이익발생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